

2026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기준

2026. 8. .

학생지원팀
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사업 자체 운영 기준

1. 사업개요

-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

2. 기본 자격요건

- 가.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,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
- 나. 당해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다.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 - ※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
- 라. 신청 대학생의 부모 주소지가 소속대학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
3. 지원범위

- 학제별·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(생활비성 장학금)

4. 우선지원기준

-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초과 지원자 발생시,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(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 준용)

우선순위	기준	비고
1	기초생활수급자	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구간이 '기초생활수급자'인 학생
2	차상위계층	한국장학재단 산정 소득구간이 '차상위계층'인 학생
3	다자녀가구	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다자녀 구분이 'Y'인 학생
4	직전 정규학기 평점평균	직전 정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(평점이 산출된 가장 최근학기 성적 사용)
5	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	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
6	총 평점평균	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
7	총 이수학점	총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
8	학년	학년 낮은 순
9	연소자	주민등록상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느린 학생

※ 신·편입생/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
※ 재학생은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/100) 이상 취득

5. 지원제외기준

- 한국장학재단 권고사항 준용
- 가. 원거리 미인정 지역거주자 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
 - ※ 단,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, 강화군 교동·삼산·서도면 제외

- 나.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자
- 다.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(휴학, 자퇴 등) 발생자
- 라.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수혜자
- 마.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,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

6. 지급방법

- 가. 매학기 최초 1개월(3월, 9월)은 익월 25일, 20만 원 정액 지급
- 나. 4월~6월, 10월~12월은 3개월분 지급 요청서 검토 후 7월중, 차년도 1월중에 일괄 지급
- 다.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, 사유를 고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
- 라.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및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 계획에 따름

7. 운영일정

- 가.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: 2026. 8. 12.(수) ~ 9. 9.(수)
- 나. 주거안정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: 2026. 8. 12.(수) ~ 9. 16.(수)
- ※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.